

(15) 지방세 지출보고서(2023년도 실적기준)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3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4,226,120,620
	비과세	12,033,942,830
	감면	2,192,177,790
지방세 징수액(B)		97,560,779,870
비과세·감면율(A/A+B)		12.7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3년(결산)	비중
총 계		14,226,120,620	100
1	일반공공행정	5,390,375,610	37.89
2	공공질서 및 안전	101,497,410	0.71
3	교육	409,167,290	2.88
4	문화 및 관광	290,506,430	2.04
5	환경보호	151,730	0
6	사회복지	514,524,020	3.62
7	보건	28,481,350	0.20
8	농림해양수산	190,427,380	1.34
9	산업·중소기업	147,287,590	1.04
10	수송 및 교통	646,240	0.09
11	국토 및 지역개발	456,881,110	2.77
12	과학기술	0	0
13	국가	6,623,448,570	46.56
14	외국	255,430	0
15	기타	72,470,820	0.51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3년(결산)	비중
총 계		14,226,120,620	100
시세	주 민 세	112,984,500	0.79
	재 산 세	13,578,454,020	95.45
	자동차세	534,682,100	3.76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면유형	'22년(결산)	'23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15,202,073,270	14,226,120,620	-975,952,650	-6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5,296,094,890	4,949,006,620	-347,088,270	-6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8,547,550	16,288,970	7,741,420	9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65,885,210	59,019,280	-6,865,930	-1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84,474,860	354,974,170	-29,500,690	-7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2,027,250	11,086,570	-940,680	-7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289,346,710	101,497,410	-187,849,300	-6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2,890,480	2,874,530	-15,950	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24,670	47,240	-177,430	-7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45,078,370	404,645,100	-40,433,270	-9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0	1,600,420	1,600,420	10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75,287,110	251,549,020	-23,738,090	-8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49,750	0	-49,750	-10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4,063,970	31,117,500	-2,946,470	-8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9,620,780	7,839,910	-1,780,870	-18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167,600	150,210	-17,390	-10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1,130	1,160	30	2
장애인에 대한 감면	224,897,300	215,853,010	-9,044,290	-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8,399,570	7,776,650	-622,920	-7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65,717,030	49,302,710	-16,414,320	-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5,668,640	5,313,040	-355,600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57,256,660	55,229,030	-2,027,630	-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33,242,800	128,654,300	-4,588,500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7,159,390	8,191,940	1,032,550	14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47,464,270	44,203,340	-3,260,930	-6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708,490	28,481,350	-2,227,140	-7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20,648,390	13,029,280	-7,619,110	-36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5,211,830	5,600,600	388,770	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22,252,220	19,653,690	-2,598,530	-11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8,746,380	18,431,930	-314,450	-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287,940	1,671,760	-616,180	-2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40,865,300	131,623,000	-9,242,300	-6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961,570	417,120	-544,450	-56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520,500	10,990,910	-4,529,590	-29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17,988,590	16,843,700	-1,144,890	-6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20,024,890	27,075,600	7,050,710	35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2,523,770	0	-2,523,770	-10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4,795,580	92,377,380	-12,418,200	-1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77,690	152,480	-25,210	-14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83,090	84,160	1,070	1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2,541,660	0	-12,541,660	-10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25,650	409,600	183,950	8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11,240	64,990,830	64,879,590	58,323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288,434,800	278,165,950	-10,268,850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32,073,180	113,724,330	-18,348,850	-13
국가에 대한 비과세	6,909,855,920	6,618,806,750	-291,049,170	-4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5,039,580	4,641,820	-397,760	-7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270,970	255,430	-15,540	-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51,647,240	51,005,260	-641,980	-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4,845,090	10,872,960	-3,972,130	-2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390,900	1,184,810	-206,090	-1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822,880	1,644,940	-177,940	-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540,790	489,670	-51,120	-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6,911,150	7,273,180	362,030	5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전체		총합계	14,226,120,620
일반공공행정		합 계	5,390,375,61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4,949,006,620
		주민세	15,360,000
		재산세	4,930,708,200
		자동차세	2,938,42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6,288,970
		재산세	16,288,97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59,019,280
		재산세	59,019,28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354,974,170
		재산세	354,974,17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11,086,570
		재산세	11,086,57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01,497,41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 (남원)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에 대한 감면 - (경북) 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양산)상업용·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소 계	101,497,410
		주민세	50,000
		재산세	20,440
		자동차세	101,426,97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교 육		합 계	409,167,29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2,874,530
		주민세	2,643,750
		재산세	230,780
8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7,240
		재산세	47,24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404,645,100
		주민세	50,941,500
		재산세	353,703,600
1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1,600,420
		재산세	1,600,42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290,506,430
1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251,549,020
		주민세	14,909,250
		재산세	236,639,770
12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 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31,117,500
		재산세	31,117,500
13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 (조례) - (조례)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	소 계	7,839,910
		재산세	7,839,910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151,370
14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소 계	150,210
		재산세	150,210
15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1,160
		재산세	1,16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514,524,020
16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 - (조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소 계	215,853,010
		자동차세	215,853,010
1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소 계	7,776,650
		재산세	7,776,65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18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복지협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22①1호) - 무료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감면,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25% 감면(조례 추가50%, §22①2호, §22③, §22④) -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면제,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에 대한 주민세면제, §22⑤, §22⑥(폐지), §22⑦)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 (감염병전문병원 6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⑧)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소 계	44,203,340
		주민세	11,575,250
		재산세	32,628,090
1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40만원 한도)(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49,302,710
		재산세	49,302,710
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5,313,040
		재산세	5,313,04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55,229,030
		재산세	154,530
		자동차세	55,074,500
2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60~85㎡(20호이상) 50% 감면, 매입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20호이상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적별 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적별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5)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4)(폐지)	소 계	128,654,300
		재산세	128,654,3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감면(225만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폐지)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공시가격 6억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8,191,940
		재산세	8,191,940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보건		합 계	28,481,350
2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2)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감염병전문병원 8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의2)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 계	28,481,350
		재산세	28,481,35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90,427,380
25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폐지)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한국농어촌공사 제외)(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 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소 계	13,029,280
		주민세	11,627,250
		재산세	1,402,03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6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무상 양여 받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3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5,600,600
		재산세	5,600,600
2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폐지) 	소 계	19,653,690
		재산세	19,653,6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8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종업원·사업소)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06의2① 1호)	소 계	18,431,930
		재산세	18,431,930
29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여·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폐지)	소 계	1,671,760
		재산세	1,671,760
3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14④)	소 계	131,623,000
		재산세	131,623,000
3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417,120
		재산세	417,120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147,287,590
32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②, §120③, §121)(폐지)	소 계	10,990,910
		재산세	10,990,910
		합 계	10,990,910
3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④)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호)	소 계	27,075,600
		재산세	27,075,600
		합 계	27,075,6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34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92,377,380
		자동차세	92,377,380
3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7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3,5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폐지)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④)	소 계	16,843,700
		재산세	16,843,700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646,240
3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152,480
		재산세	152,480
37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1% 세율 및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소 계	84,160
		재산세	84,160
38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 限)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 계	409,600
		자동차세	409,60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56,881,110
3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64,990,830
		재산세	64,990,830
4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광역공동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법50%+ 조례25%)	소 계	278,165,950
		재산세	278,165,950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13,724,330
		재산세	113,724,330

12.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국 가		합 계	6,623,448,570
42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 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6,618,806,750
		주민세	4,243,750
		재산세	6,600,879,040
		자동차세	13,683,960
43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641,820
		재산세	4,641,820

13.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기 타		합 계	255,430
44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255,430
		재산세	255,430

14.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기 타		합 계	72,470,820
45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10,872,960
		재산세	10,872,960
46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화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51,005,260
		자동차세	51,005,2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4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소 계	1,184,810
		재산세	1,184,810
48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644,940
		재산세	1,644,940
4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소 계	489,670
		재산세	489,670
5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7,273,180
		주민세	1,633,750
		재산세	3,726,430
		자동차세	1,913,000